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08년 7월 24일

국 무 총 리　　한 승 수

국 무 위 원
기획재정부 장 관　　강 만 수

◉대통령령 제2092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5일"을 "3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본문 중 "관광알선용역"을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받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것

나. 외화 현금으로 받아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된 것(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중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을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음식용역(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외국인숙박기록표”를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로 한다.

제64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의3 본문 중 “외국인숙박기록표”를 “외국인 숙박 및 음식 매출 기록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7. 제2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사업자등록 신청 시 5일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3일 내로 단축하고, 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외화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8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2009년 말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동시에 호텔에서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도 2009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영 제7조제3항)

(1) 현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일로부터 5일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2)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단축하여 신청일로부터 3일 내에 발급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창업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영 제26조제1항제5호)

(1) 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2) 관광알선용역 수수료를 외화 현금으로 받아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관광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관광호텔에서 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영 제26조제1항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1)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호텔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도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2009년 말까지 한시

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3) 이와 같이 영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관광호텔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영 제26조제1항제5호의3가목)

(1) 호텔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08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됨.

(2) 호텔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09년 말까지로 1년간 연장함.

(3)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범제처 제공>